

기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⑩ - 화산서원

선배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 담당

배향인물 이항복의 학문과 덕행 추모



최 중 규
포천명유회 회장

- 지정번호: 경기도기념물 제46호
- 지정년월일: 1975.9.5
- 시대: 1635년(인조13)
- 소재지:가산면 방축리 산16-1
- 규모: 사당 9.52평
- 재료:목조와집
- 배향인물: 백사 이항복 선생

(1) 서원의 연혁

화산서원은 가산면 방축리 산 16번지에 있는 서원이다. 이전에는 백사서원이었다가 뒤에 꽃피로 이전하면서 화산서원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있지 않아 지금까지 화산서원이 창건, 사액연도가 문헌에 따라 다르다.

창건연대는 백사서원 창건과 화산서원 창건연대를 혼동한 것이 아닌가 한다. 사액연도는 효종실록에 "효종10년 윤3월에 사액을 명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경기도 기념물 제 46호로 지정된 화산서원 외부전경(좌측)과 내부전경(우측).

분명하다. 화산서원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1631년(인조9)에 이항복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가산면 우금동에 사당을 창건하여 위패를 모시고 백사서원이라고 하였다. 1635년(인조13)에 지금의 화봉산 아래에 이전하였다. 화봉산은 본래 수원최씨의 소유였는데, 백사선생을 위하여 회사하였 다 한다. 이때 최장군이라는 사람이 하룻 동안에 혼자서 서원건물을 옮겨놓았다는 전설도 있다. 1659년(효종10)에는 이곳의 지명을 따서 화산이라 사액되었다.

그후 선배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오던 중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 5)에 철폐되어 위패는 땅에 매안 하였다. 그 뒤 유림의 뜻을 모아

사우터에 단을 만들고 향사를 이 어왔다. 1971년에 이명우 등이 화 산서원복원추진회를 결성하여 포 천유림의 공의로 사당을 복원하 고, 지속적으로 동·서재, 답장, 내·외삼문, 홍살문 등을 복원하 였다. 현재 경내의 건물로는 4칸 의 사당, 내삼문 등·서협문 각 3 칸의 필문재와 동강재 외삼문 등 이 있다. 사당 중앙에는 이항복 선생의 영정과 '文忠公白沙李先 生'이라고 쓴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영정은 근래에 모사한 것 인데, 상단에 최석정이 짓고, 이 유원이 쓴 '文忠公白沙先生像讚' 을 부기하였다. 동강재와 필문재 는 강당을 겸한 재실인데, 원내 의 여러 행사와 유림의 회합 및 학문의 토론 장소로 사용되고 있 다. 경내의 모든 현판은 호암 이 병철의 글씨이다. 서원입구에는

하마비와 백사선생유적비, 홍살 문 등이 있다. 매년 음력 9월12일 에 향사를 지내고 있으며, 제수 는 5번5두(豆)이다. 재산으로는 전답 1,200평, 서원대지 800평 등 이 있다.

(2) 배향인물

화산서원에 배향하고 있는 이 항복선생은 본관이 경주(慶州), 자는 자상(子常) 호는 필문, 백 사, 동강이다. 고려시대의 대학 자 이재현의 후손으로, 참찬 몽 량의 아들이다. 그는 오성부원군 에 봉군되었기 때문에 이항복이 나 백사보다는 오성대감으로 널리 알려졌다. 특히 죽마고우인 이덕형과의 기지와 작화에 얽힌 허다한 이야기로 더욱 잘 알려 진 인물이다.(자세한 내용은 이 항복 묘 참조)

자·유·기·고



이 홍 우
다실연위원장

"북부지역의 유적 관광지로 만들겠다"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에 있는 고모루산성(380m)은 서기 396년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이 지역 을 점령한 후 쌓았으며 나당 전 쟁시 당나라 군대를 격파한 때 초 성의 승리를 거둔 성으로 역사 학계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중인 삼국시대의 유일한 토성으로서 지금은 경기도 기념물 제185호와

포천시 향토유적 제43호로 보존 관리되어 왔다. 다산과 운허대사의 사상을 실 천하는 경제인연합(약칭:다실연) 은 최근 고모루 산성을 경기 북 부지역의 유적 관광지로 만들겠 다는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활 동에 들어갔다.

다실연은 오는 2006년 정월 대 보름 고모루 얼음축제와 연계하 여 축제 하루전에 고모루 산성의 천신제를 지내는 것을 계기로 고 모루 특유의 19만18천㎡의 크고 넓은 호수와 죽엽산(600m)의 등 산로 등을 관광과 홍보를 통하여 널리 알려져 관광객의 증가를 꾀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 등 도시와의 인접한 것을 최대한 이용하여 포천시의 관광 지역에 있는 고모루 산성을 개발의 당위성을 널리 홍보하고 2차 목적으로는 산성위에서 백일 장과 사냥총회 등을 개최하고 민 속행사 등을 유치하여 더 한층 북부지역의 유적 관광지로의 입 지를 다져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호수에 수많은 오리보트 가 떠다니는 장관과 태공들의 낚 시대가 바람을 가르며 커다란 봉 어와 잉어를 낚아 올리는 것도 또한 성지 주변에 모형 자동차 경주장, 인근에 분위기 좋은 허 브농장과 광릉 분재공원, 아프리 카 박물관과 라이브 카페 특히, 비특재 고개에 자리잡은 2개의

장승 과 주변의 먹거리 등은 고 모루산성의 관광지화에 초석이 될 것이라며 개인단체인 다실연 은 다산 정약용 선생과 운허대사 의 사상을 실천하는 모임으로 고 모루 산성을 보다 아름다운 문화 유적으로 가꾸고자 그동안 많은 유적지와 문화재 등을 견학하고 탐구해 왔다.

한편, 다실연은 2004년 4월에 공익을 위하고 지역 봉사활동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결성 하여 현재 40여명의 회원이 활동 하고 있다. 다실연은 현재 포천 시에 전통문화 연구사업비를 신 청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 기로 했다. 포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 특별기획 ●●●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⑩

검사의 지위



노 영 민
포천경찰서

이로써 우리나라의 검사는 세 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 로서 범죄수사로부터 형의 집행 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 관해서 형사사법의 정의 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능동적 이고 적극적인 국가기관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사는 다음 과 같은 법령상의 지위를 가진 다.

검사는 수사권수사지휘권·수 사종결권을 가지고,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리와 상명하복관계에 서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주체가 이 다. 먼저 검사는 수사의 주체로 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 하는 때에는 범인·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

따라서 검사는 피의자신문·참고인조사 등의 임의수사는 물론이고 체포·긴급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 등의 강제수 사도 할 수 있다.

특히 영장청구권·증거보전청 구권·증인신문청구권 등은 검 사에게만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검사는 수사의 주체자 로서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고, 사법 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소속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방검 찰청 검사장에게는 체일요구권 과 수사종결명령권이 있다. 또한 수사의 결과 공소제기의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종결권은 검사만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 은 조사한 사건의 관련서류와 증거물을 신속히 검사에게 송부 해야 한다. 이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사는 수사주체의 지위를 유지 할 수 있다.

검사는 준기소절차와 즉결심 판을 제외하고 공소를 제기·수 행하는 당사자로서의 공소권의 주체가 된다. 검사는 공소제기의 독점자로서 독점적 공소제기 권 을 가지고 있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한다. 따라서 사인소추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기소독점주 의라고 한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은 공소제기에 관해 검사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와 검사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는 공 소를 취소할 수 있는 기소변경주 의를 채택하여 공소제기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다.

그러나 검사의 기소·불기소 의 결정이 독선이나 정치적 압

력에 좌우될 우려도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은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준기소절차·불기소처분 에 대한 통지제도·불기소이유 의 고지제도 등 공정한 소추재 량을 담보하는 제도를 두고 있 다.

그리고 검사는 공판절차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공소사실을 유지하는 공소수행의 담당자가 된다. 따라 서 검사는 공소사실로서 특정한 범죄사실을 공판정에 제시하여 심판대상을 명확히 한정시키고, 입증활동에 있어서 제1차적 책 임을 부담하며, 공판활동의 마지 막 단계에 가서는 사실과 법령 적용에 대한 의견(논고·구형) 을 진술한다.

이를 위해서 검사는 공판정출 석권·증거조사참여권과 증인신 문권·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진 술권·이의신청권 등을 가진다.

또한 검사는 소추권인 동시에 공소의 수행자로서 피고인과 대 등한 지위에서 소송의 당사자 이다. 그러나 검사의 당사자로서 의 성격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 다. 당사자의 개념이 형사절차 의 본질에 친하지 않고,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당사자라고 칭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검사 를 당사자로 보게 되면 공판절 차의 검찰사법화가 우려된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訴訟의 당사 자는 당사자대등주의를 전제로 하고 당사자대등주의는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무기평등을 요 구한다. 그러나 검사와 피고인은 사회적 지위나 소송수행능력에 있어 본질적으로 동등할 수 없 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현행 형사소송법은 무기평등의 원칙 을 실현하기 위해서 양자에게 각종의 진술권·신청권, 상소권,

검사는 준기소절차와 즉결심 판을 제외하고 공소를 제기·수 행하는 당사자로서의 공소권의 주체가 된다. 검사는 공소제기의 독점자로서 독점적 공소제기 권 을 가지고 있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한다. 따라서 사인소추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기소독점주 의라고 한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은 공소제기에 관해 검사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와 검사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는 공 소를 취소할 수 있는 기소변경주 의를 채택하여 공소제기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다.

그러나 검사의 기소·불기소 의 결정이 독선이나 정치적 압

의무가 있다. 검사에게 객관적 의무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현행법이 실제적 진실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직권주의구조로 부터 법의 적정절차를 이념으로 하는 당사자주의로 전환했기 때 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검사에게 객관적 의무를 인정해야 한다. 준사법기관화한 검사의 지위로 부터 범죄국가원리나 적정절차 를 실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 다. 특히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상소·재심청 구권을 인정하고, 비상상고권자 는 검찰총장에 한정하고 있다.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인 권옹호에 관한 직무를 담당한다. 인권옹호직무는 범죄국가의 요 청이다. 따라서 검사는 사법경찰 관리에 의한 불법구속을 억제하 기 위해서 인권침해사건을 조사 할 권한과 책무가 있다. 또 지방 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 기 위해 검사로 하여금 매월 1 회 이상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케 하여 체포·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 련서류를 조사토록 하며, 적법절 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즉시 체 포·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 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 도록 하고 있다.

검사는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권한을 가진다. 검사의 소추관으로서의 지위에서 비롯 된 당연한 권한이다. 이를 특히 논하는 실익은 법원이 자신의 오판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 고 반드시 당사자의 청구가 필 요하다는 데 있다.

(다음호에 계속)

포장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비닐쇼핑백, 종이쇼핑백, 각종 비닐포장재 전문생산업체 대봉매리트



포장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대봉매리트는 기획에서 디자인, 인쇄, 가공, 완제품 납품에 이르기까지 전공정을 원라인으로 처리하여 귀사의 제품을 보다 안전하고 품위있게 유지시켜 드리겠습니다.

비닐 쇼핑백



비닐 제품



공장·사무실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611-4
Tel. 031)544-0051
Fax. 031)544-0052

대표: 임 대 섭